

동아리등록과 운영에 관한 내규

- 제정 : 1984. 03. 01
- 개정 : 1986. 12. 01
- 개정 : 1989. 03. 01
- 개정 : 2005. 05. 13
- 개정 : 2006. 08. 22
- 개정 : 2017. 05.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동아리연합회에 속하는 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범위) 모든 동아리는 총학생회 산하 동아리연합회에 속하고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단, 신입생은 1학년 2학기부터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등록요건) 동아리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 55조, 제56조, 제92~96조에 부합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2.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회원이 5개학과 2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4. 동아리는 자체 희망에 의하여 지도교수를 선임할 수 있다.

제4조(등록절차 및 승인) 동아리등록 (신규, 재등록포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 15일 까지 구비서류(학생지원처 비치)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연합 회장명의로 공고하여야 한다.(단, 지도교수 선임시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5조(등록시 구비서류) 동아리 등록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체등록원(소정양식)
2. 서약서(소정양식)
3. 지도교수 취임승락서(소정양식, 지도교수 선임시 해당)
4. 회원명단
5. 연간(월별) 활동계획 및 전년도 실적(등록시) 보고
6. 회칙

제6조(임원선출) ①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각 동아리의 회칙에 따른다.

② 임원이 선임되었을 때는 그 명부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동아리 회원이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동아리 활동을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겸임할 수 없다.

④ 지도교수는 해외연구 파견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재중일 경우 다른 교수에게 일정 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다만, 학생처장에게 위임교수를 추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8조(재정) ① 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예산은 총학생회의 예산 편성 내역에 책정되어야 한다.

③ 총학생회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동아리연합회장이 행사계획원을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 동아리연합회 예산에서 보조를 받는다.

제9조(활동범위)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매학기 초 활동계획서 및 전 학기 활동보고서를 동아리연합회를 경유하여 학생처에 제출한다.

② 모든 행사는 행사 1주일 전에 행사신고원(학생처 비치)를 첨부하여 학생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야간 옥외 집회시의 횃불,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등록취소) ①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동아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동아리의 활동이 총학생회 회칙에 위배되거나 학교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3. 1년간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진한 경우

4. 이 내규 제 11조의 규정에 따른 동아리룸 사용에 대하여 학생처장의 시정 지시를 받고도 이행치 않을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통폐합 할 수 있다.

제11조(동아리실 사용) ① 동아리실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생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실에서는 전열기 사용, 고성방가, 음주행위, 취침행위, 낙서를 금하며,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공지사항은 종에 적어 부착할 수 있다.

③ 동아리실은 활동실적, 전통, 발전성 등을 심사하여 학생지원처에서 배정한다.

④ 각 동아리실에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비품관리) ① 동아리룸에 비치된 비품에 대하여 손·망실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장이 변경될 경우는 학생처 담당직원 입회하에 후임자와 비품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에 기록된 비품 목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비품은 동아리연합회장이 관리하며 손·망실된 비품은 동아리연합회장과 회원이 변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